국토교통부	보 도 자 료		대한민국 대전환 한국판뉴딜
	배포일시	2022. 1. 25.(화) / 총 5매(본문2, 참고3)	
담당 부서	지적재조사기획단 사업총괄과	담 당 자	• 과장 류제룡, 사무관 김일 • ☎ (044) 201-4655, 4657
보 도 일 시		2022년 1월 26일(수)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※ 통신, 방송, 인터넷은 1. 25.(화) 11:00 이후 보도 가능	

2022년 지적재조사사업 본격 확대 추진

- 토지분쟁 해소·국토정보 디지털화로 국민 삶의 질 향상에 적극 기여 -

□ **국토교통부**(장관 노형욱)는 **'22년 지적재조사사업 추진**을 통해 토지 경계분쟁 등으로 국민재산권 행사에 불편을 겪고 있는 전국의 **약 32만 필지**에 대한 **지적불부합지***를 **해소**할 계획이라고 밝혔다.

* 지적공부의 토지경계와 실제 이용하고 있는 현실경계가 불일치한 토지로 전국의 약 14.8%(554만 필지)가 지적불부합지로 조사됨

○ 지적재조사사업은 100여 년 전 일제에 의해 제작된 종이지적도를 정밀한 측량을 통해 **지적공부**의 **등록사항**을 **바로 잡는 국가사업**이다.

□ '12년 지적재조사사업 착수 이후 **'21년까지 총 109만 필지**에 대한 사업을 **완료**하였으며, 그간 연 평균 사업량은 약 8만 필지 수준이었으나 **'22년**은 예년 평균보다 **4배 이상 증가한 32만 필지**의 지적불부합지를 해소할 수 있게 되었다.

[연도별 지적재조사사업 추진 실적]

○ **국토교통부**는 증가된 사업량을 **연내 소화**하기 위하여 **지난해부터** 지적재조사사업에 필요한 ❶**기준점측량** 및 사업지구 **드론 촬영** 등을 선제적으로 착수하였고,

○ ❷「지적재조사 책임수행기관 제도*」 시행에 따른 **민간대행자**(120개 업체) **선정**을 지난해 말까지 미리 **완료**하였을 뿐만 아니라,

* 지적재조사사업을 책임수행기관(한국국토정보공사)에 위탁하고, 책임수행기관은 공정 중 일부(10개 중 4개공정, 약35%~40%)를 민간에 대행하는 제도

○ ❸각 지자체별 **국고보조금**을 **조기**에 **교부**를 완료하는 등 사업의 속도감을 높이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였다.

□ 또한 올해는 **책임수행기관 제도**가 **본격**적으로 **시행**되는 원년인 만큼 한국국토정보공사와 민간대행자가 **지적재조사측량 공정**을 **분담 수행**함으로써 **대폭 증가된 사업량**을 **충분히 소화**할 수 있는 체계가 갖추어져 있다.

○ 국토교통부는 책임수행기관인 한국국토정보공사와 함께 1월 24일부터 26일까지 **민간대행자**를 위한 **권역별 워크숍**을 **개최**하는 등 공공기관과 **민간의 상생협력 파트너십**을 **강화**함으로써, **성공적**인 **사업 추진**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.

□ 국토교통부 **강주엽 지적재조사기획단장**은 "지적재조사 사업을 통한 **민간산업 활성화**에 **정책적인 노력과 지원**을 아끼지 않을 것"이라면서,

○ "올해는 사업 착수('12년) 이래 연간 **최대 사업량**을 추진함에도 불구하고 **적기 사업**을 **완료**함으로써 **국민 삶의 질 향상**에 기여할 수 있도록 **최선**을 다할 것"이라고 덧붙였다.

OPEN 출처표시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

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국토교통부 지적재조사기획단 김일 사무관(☎ 044-201-4657)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참고 1 지적재조사 사업개요

□ **(추진배경)** 토지경계를 등록한 **종이 지적도면의 훼손·마모** 등으로 인해 **전국적으로 지적불부합지*가 발생**하여 **경계분쟁** 지속

* 지적공부상의 토지경계와 실제 이용하고 있는 현장경계가 불일치한 토지

<종이 지적도>	<지적불부합지 현황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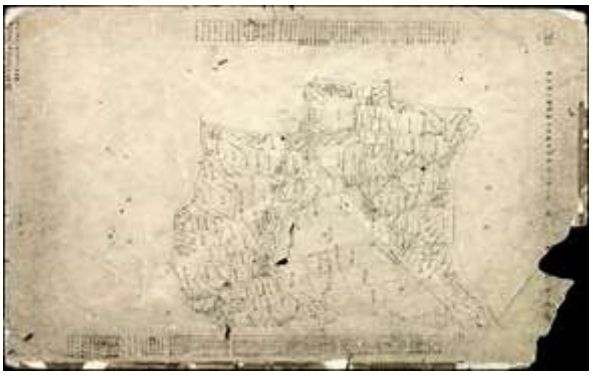	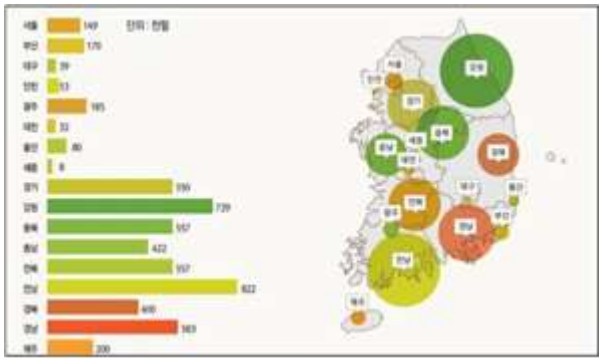

☞ 현 지적공부는 **토지조사사업**(1910~1918년) 당시 측량기술로 종이도면에 등록되어 전국의 14.8%(554만 필지)가 지적불부합지로 조사됨

□ **(사업내용)** 100여년 전 일제강점기 만들어진 **종이 지적공부**를 **최신 기술로 새롭게 등록**하면서 **지적불부합지를 바로잡는 국가사업**

사업대상	사업기간	총사업비	근거법령
554만필지 (전국 3,743만필지의 14.8%)	'12 ~ '30 (19년간)	1조3천억원 ('12년 예타)	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('11. 9. 16. 제정)

□ **(추진체계 및 절차)** **국토부**(기본계획 수립, 사업관리), **시·도**(지구 지정), **시·군·구**(경계확정, 조정금산정), **지적측량수행자**(일필지조사 및 측량)

<사업추진체계>	<절차도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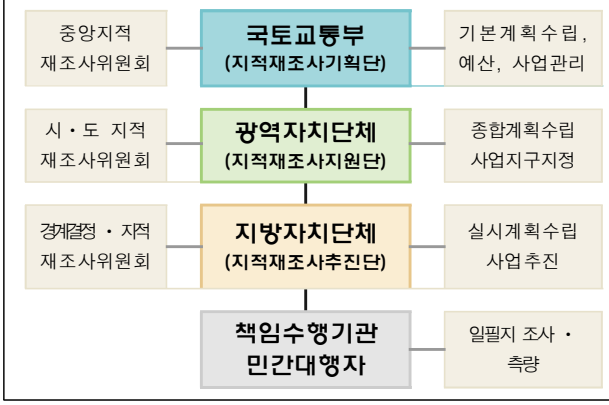	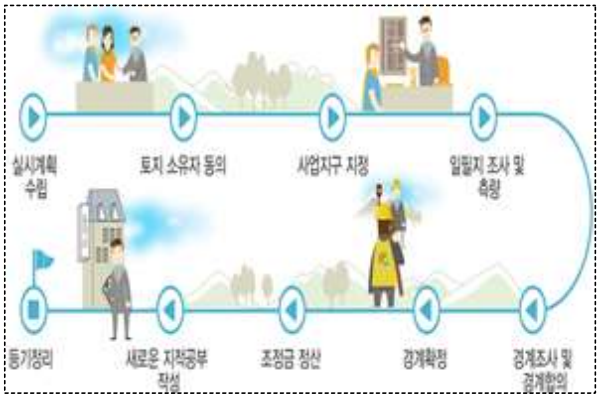

참고 2 **지적재조사 책임수행기관 제도 요약**

【 추진배경 및 목적 】

①**사업예산 증가**(137→700억)에 대한 탄력 대응, ②지구별 **사업공기 단축**(2→1년) 및 ③**민간측량수행자 참여 확대**(7→35%이상)를 통한 **산업 활성화** 필요

□ 그간 추진경과

○ **('19.09.16)** 책임수행기관 운영계획(안) 마련 **T/F 구성**(국토부, LX, 협회)

○ **('19.12.03)** 책임수행기관 **정책설명회 개최**(지자체, 학계, LX, 민간 등)

○ **('20.02.17)** 지적재조사 책임수행기관 **시범사업 추진**(10개 지자체)

○ **('20.12.22)** 책임수행기관 위탁근거 마련을 위한 **특별법 개정**

□ 책임수행기관제도 주요 내용

❶ 상생·협력체계 마련

○ **(지적재조사측량 분담)** 사업지구별 지적재조사 수행자 업무공정 중 **책임수행기관부분과 민간부분을 구분**하여 분담업무 수행

- 비교적 난이도가 낮은 **일필지측량과 면적측정 부분만 민간업체**(35~40%)에서 수행, **나머지 공정은 책임수행기관**(60~65%) 전담 수행

* 구체적인 추진절차와 공정 분담비율은 조사·연구를 통해 추후 결정

< 지적재조사 공정 및 민간대행자 참여비율 >

지구계 측량	일필지 측량	면적측정 및 계산	토지현황 조사서 작성	경계 조정·협의	확정 경계점 설치	경계 확정 측량	지적확정 예정조서 작성	지상 경계점 등록부 작성	이의신청 처리 및 성과물 작성
8%	23%	6%	6%	21%	5%	5%	3%	9%	14%
책임수행기관	대행자			책임수행기관	대행자	책임수행기관			

❷ 책임수행기관 공적역할 확대

○ **(전담팀 운영)** 책임수행기관은 지역본부 단위에 **지적재조사 전담팀**을 구성하고, 지적재조사 경계협의·조정, 사업관리 등에 **집중 투입**

○ **(사업지원체계 마련)** 책임수행기관은 사업관리부서와 별도로 **Help-Desk, 기술자문단** 등을 설치하여 **전문적 지원체계** 구축

○ **(기술 및 교육지원)** 민간업체 수행자의 지적재조사 전문기술과 실무능력 배양을 위한 **기술이전 및 다양한 교육프로그램** 운영

❸ 안정적 사업추진 지원

○ **(효율적 인력 운영)** 일반 지적측량업무 수요가 적은 **매년 1~3월**에 유휴인력을 활용하여 **선제적으로 지적재조사측량 착수·수행**

* 기존에는 지적측량수행자 선정과정을 거쳐야하므로 매년 5월 이후 착수 가능

○ **(전문성 확보)** 지적재조사 공정 중 **업무를 분담하여 수행**함에 따라 책임수행기관 및 민간업체 **상호 전문성이 확보**되어 **공기단축** 기대

* 책임수행기관이 경계협의·조정을 전담함으로써 대민 공신력 및 신뢰성 제고

○ **(사업관리 내실화)** 책임수행기관이 지자체에 최종 성과물을 납품함에 따라 **사업지구에 대한 총괄 사업관리** 등 책임수행

□ 기대 효과

○ **(사업기간 단축)** 일필지측량(민간)과 경계협의·조정(책임기관) 절차를 분리하여 **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사업 추진**을 통한 사업기간 단축

○ **(민간산업 활성화) 과도한 경쟁관계를 해소**하고, **일부 민간업체의 독과점을 예방**하여 민간시장의 안정적 발전에 기여

○ **(일자리 창출)** 책임수행기관 **전담팀 운영에 따른 인력 확충**과 **민간업체 참여 확대**에 따른 신규 인력 등 일자리 창출효과 기대